

경운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센터는 경운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(이하 ‘사회봉사센터’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센터는 첫째, 학내구성원들의 봉사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본교의 교육 이념 구현에 이바지한다. 둘째, 사회봉사활동을 조직화하고 전문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 하고 실천한다. 셋째, 사회봉사활동을 인증하고 이와 관련된 공신력을 보장한다. 넷째, 재학생들이 국내외 봉사활동을 통하여 글로벌 능력향상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다섯째,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.

제2장 기 구

제3조(직제와 조직)

1. 센터장은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2. 센터는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인력을 둘 수 있다.
3. 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해 경운봉사단을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조직) 사회봉사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1. 사회봉사센터의 제반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2. 사회봉사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·행정 및 봉사활동으로 구분한다.

제5조(기능) 사회봉사활동의 계획·시행 및 지원, 사회봉사센터의 운영 및 교내 봉사단체운영·관리, 사회봉사과목 운영 및 이력관리, 사회봉사전산망 운영 등 사회봉사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.

제3장 교과목 운영 및 인증서 발급

제6조(교과목운영) 교과목명은 ‘사회봉사’로 하고 매학기 일반선택으로 교무처에서 개설하고 사회봉사센터에서는 관련 업무의 절차수행 및 사회봉사활동내역을 인정하고 관리한다.

제7조(교과목이수 절차) 교과목 이수를 위한 절차는 수강신청 후 학기말 별도의 공고기간 중 사

회봉사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봉사지원센터에 신청하고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한다.

제8조(교과목 이수) 교과목의 이수는 이론 수업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학점인정) ① 사회봉사활동 특별학점 인정범위는 1일 5시간 이내, 3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며, 재학 중 2학점까지 인정한다.

② 사회봉사활동은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한다. 단 이미 인정받은 봉사활동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.

③ 기타 논의되지 않은 사항은 경운대학교 특별학점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사회봉사활동의 인정) ① 사회봉사활동 인정은 ‘1365자원봉사 포털’,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센터(VMS)’ 및 우리대학이 인정한 봉사기관을 통한 사회봉사활동과 더불어 우리대학교의 장애학생 도우미 봉사활동의 경우에 인정한다.

② 교내 및 해외 봉사의 경우 사전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사회봉사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인정 할 수 있다.

③ 기타 사회봉사활동의 인정은 학생 및 기관의 심의요청에 의해 센터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.

제11조(인증서 관리 및 발급) 사회봉사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이력을 관리하고 요구 시 총장명의로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한다.

제4장 장학 및 특전

제12조(사회봉사장학 및 특전) ①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부(과), 동아리 및 개인(임장지도교수 포함)을 선발하여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장학금 지급, 취업추천, 해외연수 및 해외 자원봉사자 선발 등에 있어서 사회봉사 실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③ 봉사장학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경운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른다.

제5장 운영위원회

제13조(설치) 사회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14조(구성) 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총장이 임명한다.
2.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.

3. 간사는 사회봉사 실무자로 한다.

제15조(임기)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6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회봉사활동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사회봉사활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
3. 사회봉사활동 과목 이수절차 및 인정에 관한 사항
4. 연간 활동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안 심의 및 자문
5. 기타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

제17조(회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서식 1】

사회봉사 학점 인정 신청서

소속대학			학부(과)			
학 번			학 년			
성 명			연 락 처			
사회봉사 활동 인정기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(1일 5시간인정. 학기당 30시간 1학점 인정)					
사회봉사 활동 인정 명	날 짜	시 간	시간수	장소	봉사활동 내용	
	20 . . .	: ~ :				
	20 . . .	: ~ :				
	20 . . .	: ~ :				
	20 . . .	: ~ :				
	20 . . .	: ~ :				
	20 . . .	: ~ :				
	시간계					

붙임 사회봉사활동 이수 내역서 첨부(1일 봉사시간 확인가능해야 함)

위와 같이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학부장 (인)

경운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장 귀하

【별지서식2】

교내사회봉사활동 신청서		담 당	센 터 장	처 장
교내기관 및 부 서	기관 및 부서명			
	담당자 연락처			
봉사활동 사 항	기간 및 시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(총 시간)		
	장 소			
	내 용			
위와 같이 교내 사회봉사활동을 실시코자하오니 승인을 바랍니다 .				
20 . . . 신청자 _____ (인,서명)				
경운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장 귀하				

【별지서식3】

교내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		담 당	센 터 장	처 장
교내기관 및 부 서	기관 및 부서명			
	담당자		연락처	
봉사활동 사 항	기간 및 시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(총 시간)		
	장 소			
	봉사자수			
	내 용			
<p>위와 같이 교내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</p> <p>첨부: 봉사자 명단 리스트</p> <p>20 . . .</p> <p>ex) _____ (인,서명)</p> <p>경운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장 귀하</p>				

